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(2010년 12월 3일)  
상정 의결

#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김용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책무(안 제4조)
- 의전상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
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(안 제10조)

#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명시하고,
-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우,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을
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사항을
- 안 제10조에는 희생·공헌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.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제1항에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’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2010. 8. 24일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생업지원에 대한 조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어,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審査結課：原案 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0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의 응분의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(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)

나.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시책. (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)

- 1) 구의 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책무 (제4조)
- 2) 의전상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 (제5조 ~ 제6조)
- 3)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근거 마련 (제7조 ~ 제9조)
- 4)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(제10조)
- 5) 민간 참여 여건 조성 및 관계 기관 협조 (제11조 ~ 제12조)
- 6) 시행 규칙 (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연간 20,000천원 소요 예상(전액 구비)

다. 합 의 : 관계부서 별도 의견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10.10.21 ~ 11.10) 결과 : 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관계 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4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대상)**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
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3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4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
6. 그 밖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

**제4조(책무)** ① 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  
 ② 국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예우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경일·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,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)**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2.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3. 명절, 보훈의 달 등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위문금 지원
4.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
**제7조(보훈단체 지원)**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
2. 호국 · 보훈정신 함양 ·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
3.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8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**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복지지원 등)**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구가 설치 · 관리하는 공원 · 체육시설 · 주차장 ·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
2. 보건소 등 구가 설립 ·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
3. 구가 설치,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, 구두수선대,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나 운영의 허가, 위탁시 우대

**제10조(사망위로금 지급)**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 ·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사망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가족의 범위 및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민간의 참여조성)** 구청장은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**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**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아니한다. 단, 제10조는 예외로 한다.



